

의안번호	2218812
의 퇴 인	김문수 의원
회 답 일	2026. 8. 7.
추 계 번호	26C252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 고
1	안 제6조의3 제3항 신설 (소득인정액의 산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람이 얻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제소득에 산입하지 않음	의무규정
2	안 제12조의3제3항 신설(의료급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가하여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때부터 2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봄	
3	안 부칙 제2조(적용례)	제6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실시 중인 조사의 대상자에게도 적용함(제1항) 제1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제23조에 따라 실시 중인 조사의 대상자에게도 적용함(제2항)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2조의3(의료급여)	
3	안 부칙 제2조(적용례)	

2. 상세 사유

□ 소득인정액의 산정(안 제6조의3제3항 신설, 안 부칙 제2조제1항)

-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 중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람에 대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의 70%를 공제할 경우, 현행법 적용 시 소득인정액 초과로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사람이 새롭게 수급자로 편입되거나 기존 수

급자의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급여비 지급액이 증가할 수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안 부칙 제2조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실시 중인 조사의 대상자도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 70%를 공제하도록 함
- 그러나 현재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수, 가구별 소득·재산·가구원 수, 비수급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에 대한 자료는 부재하므로 개정안 시행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변동될 급여별 기존 수급자 수, 신규 급여 수급자 수, 급여별 지급액 증가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수급자 수 및 등록장애인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1]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등록장애인 현황: 2026년 6월

(단위 : 명)

구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전체 수급자	1,942,786	1,599,474	2,771,579	299,776
등록장애인	547,854	492,233	624,051	17,424

□ 의료급여(안 제12조의3제3항 신설, 안 부칙 제2조제2항)

- 개정안은 장애인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2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개정안 시행 시, 현행법에 따라 수급권을 상실할 자의 수급권이 2년간 유지되어 발생할 의료급여비와 수급자 수 증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2026년 “의료급여” 사업에 9조 8,400억원(국고보조율 75.7%)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므로 현시점에 구체적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 수, 의료 이용 행태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 다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인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진료비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 장애인인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진료비 현황: 2026년 2월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 수		463,051	464,096	462,438	478,718	493,426
장애인 총진료비	기관 부담금	4,282,041	4,497,069	4,823,060	5,104,020	5,626,131
	본인 부담금	108,043	118,860	130,616	133,111	143,331

주 1.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2. 진료비 및 기관부담금, 본인부담금은 지급 기준임¹⁾

- 따라서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소임	문지은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소임	02-6788-4742	soimlee@nabo.go.kr

1) 기관부담금은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은 총 진료비에서 기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임